

제 372호  
(2021. 01. 31 발행)

2021 회원사CEO



# CONTENTS

주요업무 및 업계애로 해소 추진 현황 .....	02
건설법령 개정 동향 .....	10
2020년 10·11·12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	34
건설업체 현황 .....	35
회원사 무료 상담서비스 안내 .....	39



# 「주요업무 및 업계어로 해소 추진 현황」

## 가. 「건설현장 좋은 일자리 만들기」 관련 건의

- 건 의 처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혁신과장
- 건의일자 : '20. 10. 13

### ■ 추진 경위

- 서울시는 우리사회에 건설현장을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 등을 모색하고자 협조를 요청 ('20. 9. 10)
- 이에, 우리사회는 「건설현장 좋은 일자리 만들기」 관련 건의를 송부, 향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검토·반영을 건의

### ■ 건의사항

-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적정임금 보장
  - 서울지역 기능인력의 지속적인 고용유지와 기능인등급 상승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참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예시)〉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령
현장배치기준	금액별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에 등급 부여 기능인도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업체 등록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능인 보유기준 지정 및 보유시 자본금 경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시공능력평가	기능인 보유현황에 따라 가중치 부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입찰찰 제도	종합심사낙찰제·적격심사제 등 반영 *(종합제) 사회적 책임 중 건설인력 고용 항목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조달청)
	적격심사제 반영 *PQ 신인도 항목에 반영 등	적격심사 세부 기준(조달청)

- 서울형 건설공사 적정공기 산정 기준 마련
  -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울형 건설공사 적정공기 산정기준' 마련
  - 서울시 공사의 특성(공종별·공사규모 등)에 맞는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모델 발굴하여 산하기관, 기초지자체 등에 시달(최소 표준공기 이상 산정)
- 국가계약법과의 형평성 제고와 입찰자 혼란 방지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 등 서울시의 선제적 제도 마련
  - 지방계약법 상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규정 신설 행안부 건의
  -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입찰공고 시 적정공기 산정근거 공개' 기준 마련·적용
- 공사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
  - 낙찰차액을 설계변경 증액분 등 부족한 공사비로 활용하거나 지방재정법(제43조)상 예비비제도를 활용하여 공사비 충당이 가능토록 개선
  - 공사기획단계부터 충분한 예산확보 후 공사 발주를 원칙으로 하는 서울시 '계속비공사 발주기준' 마련

- 서울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적 지원 인프라 적극 활용
  - 서울 소재 스마트 건설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Start-up) 기업 지원책 마련 필요
  - 기존의 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건설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Start-up)의 성장사다리(재정 및 기술개발·경영 컨설팅 지원 등 서울시 발주사업 우선 적용) 기반 구축

### 나. 착공 전 굴착공사 등 유사중복 심의 개선 관련 건의 결과 안내

- 건의처 : 국토부, 서울시
- 협조요청 : 본회(신사업실, 7월 협조요청)
- 건의(회신)일자 : '20. 11. 10

#### ■ 추진 경위

- 우리시회는 「계약업무담당자협의회('20. 7. 2(중소기업), 7. 9(대기업)) 및 「정책위원회 간담회(7. 24)」에서 문제 제기된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본회에 개선을 요청
  - 지하굴착공사 관련 '서울시 굴토전문위원회 심의'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절차 중복 및 부당심의 개선

#### ■ 건의사항

- 토지굴착 공사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와 굴토 전문위원회 이중 심의로 공사기간 지연
- 동 심의시 관련 전문가(위원)들의 설계기준을 무시한 특정공법 명시 및 과도한 공사조건 추가로 실행원가 상승 등 공사수행에 문제

#### ■ 추진 결과

-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시 발생하는 특정공법 명시, 과도한 공사 추가조건 등을 개선코자 지하안전영향 평가서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
- 국토부는 서울시에 시·구청 등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외 진행되는 굴토 전문위원회 중복 심의에 대한 개선을 요청

### 다. 종합평가낙찰제 심사기준 개선 관련 건의

- 건의처 : 서울시(건설혁신과장)
- 건의일자 : '20. 12. 2

#### ■ 추진 경위

- 우리시회는 종합평가낙찰제 시공품질평가의 경우 '21. 1. 1부터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를 반영할 예정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니터링하여 건의 추진
  - ※특히, '20. 12. 31까지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

#### ■ 건의사항

- 공동수급체 시공품질평가 심사 시 '대표사만 평가'토록 개선 또는 적용유예 관련 서울시·행정안전부 건의

### 라. 도시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 조기발주 관련 건의

- 건의처 : 서울시(재무과, 안전총괄과, 도시시설과, 교량안전과 등)
- 건의일자 : '20. 12. 7, 12. 15

■ 추진 경위

- 서울시는 내년도에 착공할 일상유지보수공사를 올해 안에 발주하기 위해 「'21년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조기발주 추진계획」('20. 9. 29)
- 또한, 이에 근거한 「'21년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발주계획」('20.12. 4), 「'21년 일반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발주계획」('20. 12. 6)을 내부적으로 수립· 보고
- 우리사회는 유지보수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환에 의해 내년도부터 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함을 검토· 건의 추진

■ 건의사항

- 유지보수공사를 조기 발주한다면 입찰참가자격에 종합공사업(토목공사업) 반드시 포함
  -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산하공기업 및 지자체(인천, 전남, 경기)는 내년부터 발주할 공사에 적용할 건설업역 폐지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업역 개편 추진 시범사업 발주
- 만약 입찰참가자격에 종합공사업 포함이 안된다면, 발주를 연기하여 내년에 발주
  - 지방계약법 제23조 등에 따라 조기 발주 근거조항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임의규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종합 및 전문 입찰 참가자격 허용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아 조기 발주는 적절하지 않음
  - 내년부터 발주되는 시설물유지관리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및 해당 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여를 허용해야 함

마. 서울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관련 건의

- 건의처 : 서울시(안전총괄과)
- 건의일자 : '20. 12. 18

■ 추진 경위

- 서울시는 우리사회에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사례 발굴을 협조요청('20. 10. 29)
- 이에 우리사회는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관련 건의 추진('20. 12. 18)

■ 건의사항

- 공공시설물 부분인수· 사용 활성화, 현장설치도 포함 관급자재 발주 개선,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개선,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구체화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건의





## 바. 관급자재 관련 개선 건의

- 건 의 처 : 서울시, 시의회, 25개 구청 등
- 건의일자 : '20. 10. 6

### ■ 문제점 및 추진경위

-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설치해야 하는 관급자재(관급자설치 관급자재)를 물품 구매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동 자재의 설치까지 허용하는 부적정사례 빈번

#### 예시

- 발주기관이 건축공사에서 관급자재인 금속창호의 구매계약을 창호업체와 체결 하면서, 동 창호의 설치까지 계약내용에 포함
- 발주기관이 울타리 제작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울타리 설치까지 지시

- 위 사례를 통해 우리시회는 ①건설물량 축소 및 당사자간 갈등 유발, ②하자 보수 및 품질확보에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③편법 운영에 따른 법제도 취지 훼손의 문제점 파악건의 추진

### ■ 건의사항

- 창호·울타리 등 시설물에 설치가 필요한 자재는 기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

## 사. 건설공사대장 확인 및 통보 안내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하수급인 미기재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회사\*에 억울하게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사항 통보(10. 12)

\* 해당업체 명단 협조 : 국토부, KISCON

구분	위법혐의내용						합 계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미기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교부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20. 9월	8개사	8건	24개사	35건	32개사	46건	57개사	89건
'20. 10월	73개사	184건	13개사	23건	32개사	50건	112개사	257건

※ 건설공사대장 확인방법

- ① 건설산업정보센터(<http://www.kiscon.net>) 접속
- ② 주요서비스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바로가기' 클릭
- ③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건설업체로 로그인
- ④ 건설공사 대장관리 화면 - '신규작성' 또는 '조회&변경통보'

위반혐의사항	건설업체가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건설공사대장에 하수급인 미기재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계약사항 입력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보증서 발급시 발급정보 입력, 면제사유 해당시 증빙서류 첨부

# 「건설법령 개정 동향」

## 가. 건설업종 개편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 안내('20. 12. 31)

- 국토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20. 12. 29)

### ■ 개정 주요내용

####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별표 1, '22. 1. 1 시행)

- (현행) 29개 전문업종 → (개정) 14개 전문업종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4. 1. 1부터 폐지(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현행			개정		
업종 (개정안의 주력분야)	기술 능력	자본금	업종	기술 능력	자본금
1. 토공사업	2인	1.5억원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인	1.5억원
2. 포장공사업	3인	2억원			
3.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2인	1.5억원			
4. 실내건축공사업	2인	1.5억원	2. 실내건축공사업	2인	1.5억원
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1.5억원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2인	1.5억원
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1.5억원			
7. 도장공사업	2인	1.5억원	4. 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	2인	1.5억원
8. 습식·방수공사업	2인	1.5억원			
9. 석공사업	2인	1.5억원			
10. 조경식재공사업	2인	1.5억원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인	1.5억원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인	1.5억원			
1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인	1.5억원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인	1.5억원
13.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인	1.5억원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2인	1.5억원

현행			개정		
업종 (개정안의 주력분야)	기술 능력	자본금	업종	기술 능력	자본금
14.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8.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15.철도·궤도공사업	5인	2억원	9.철도·궤도공사업	5인	1.5억원
16.강구조물공사업	4인	2억원	10.철강구조물공사업	4인	1.5억원
17.철강재설치공사업	5인	7억원			
18.수중공사업	2인	1.5억원	11.수중·준설공사업	2인	1.5억원
19.준설공사업	5인	7억원			
20.승강기설치공사업	2인	1.5억원	12.승강기·삭도공사업	2인	1.5억원
21.삭도설치공사업	5인	2억원			
22.기계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13.기계가스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23.가스시설시공업(제1종)	2인	1.5억원			
24.가스시설시공업(제2종)	1인	-			
25.가스시설시공업(제3종)	1인	-	14.가스난방공사업	1인	-
26.난방시공업(제1종)	2인	-			
27.난방시공업(제2종)	1인	-			
28.난방시공업(제3종)	1인	-			
29.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4인	2억원	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파일공사업은 종전 비계·구조물해체 → 보링·그라우팅으로 이동

- '22.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

- 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

#### ② 전문업종 주력분야 제도 도입(제7조의2, '22. 1. 1 시행)

-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 도입

-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
- 기존 전문업체의 경우,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

③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부칙 제2조 및 제6조, '22. 1. 1 시행)

- 기존 사업자('20. 9. 16. 이전에 시설물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함)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대업종\* 중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 가능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3. 12월까지만 유효하고 '24. 1월에 등록 말소
- 시설물 업종 전환 사전등록은 '21년부터 시행하고, 신청절차·방법, 실적 전환·가산방법 등은 별도 고시 예정

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안내('20. 10. 8)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건설업 교육 방법 확대(제12조의4 제2항)
  - (종전) 강의, 시청각교육 등 → (개정) 강의, 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
- 부대공사 인정기준\* 명시 및 부대공사의 범위·기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국토부 고시 근거 마련(제21조)
  -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 및 연계성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상호시장 진출시 예외적 하도급 허용범위(제31조의 2)
  -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이 원칙인 바, 예외적으로 하도급 가능한 범위 설정
  -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20%이내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신기술공사, 특허공사, 교량의 철구조물 공사, 특정 건설기계 사용 공사 등을 하도급 하는 경우로 한정
-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 확대(영 제34조의 5, 규칙 제28조 제6항 제1호)
  - 의무사용 발주자: (종전)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개정) 기타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추가
  - 의무사용 예외: (종전)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개정)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제44조의 2 및 제87조 제1항 제5의 2호 신설)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평가자료 요청 및 고용평가 기관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 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 설정(별표 3의2 제2호 마목 및 바목 신설)
  -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련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설정: (1차) 1개월 (2차) 2개월
- 행정처분 기한 설정(별표6 제1호 사목 신설)
  - 행정처분을 위임받은 처분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함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업역개편에 따른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폐지(제13조의 2 삭제)
  - ※ 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부터 시행
- 건설업등록 행정정보이용 사무 확대(제2조 제2항 제5호)
  - (종전) 건설업등록 신청인은 기술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함
  - (개정) 신청인은 기술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기술인력보유현황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를 확인해야 함
    -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고용보험가입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함
-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의 범위(제13조의3 신설)
  - 종합업체가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
-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및 절차(제13조의 4 신설)
  - 상대업종 등록기준 보유 확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발주자의 확인의무 명시
  - 건설공사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근거 마련

〈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등록기준 구비 확인 서류 〉

등록기준	전문 → 종합공사	종합 → 전문공사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서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서
자본금	• (법인)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개인)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증빙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
장비	-	• 자기소유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임대차 :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직접시공실적 증명서류\* 제출 및 직접시공실적 공시 제도 도입 (제22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 제5호)
  -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건설공사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 다만,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 경우는 제외
-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 실적 인정범위(제23조 제10항)
  - ① 종합업체가 종합 또는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한 실적의 전부를 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
    - ※ 종합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도 전부 인정
    - \*1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전문업체에게만 하도급 가능(개정 건설법 제29조 제4항)
  - ② 종합 또는 전문업체가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상대시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동 실적 금액은 해당 공사를 시공한 종합 또는 전문 업종의 실적에 합산
  - ③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재하도급한 경우에는 재하도급한 실적의 1/2만을 하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

④ 전문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므로 이를 예외적으로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한 실적의 1/2만을 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

⑤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이 원칙이므로 예외적으로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한 실적의 1/2만을 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

- 하도급 통보시 하수급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26조 제2항 제6호)
  - 하도급계약이 공동도급 형태로 체결된 경우, 하도급계약 통보시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시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 대여대금 보호대상 가설기자재 명시(제27조의 4 제2항 신설)
  - 비계 : 강관비계, 조립형비계,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및 조립식 안전난간
  - 동바리 : 파이프 서포트, 적 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및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거푸집 : 강재틀 합판 거푸집
    - ※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보호제도 신설('20. 4. 7 건설법 개정) 후속조치

• 종합 · 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 마련(부칙 제6조)

종합실적 → 전문실적	전문실적 → 종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공사 실적 중 2/3*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li> <li>* '18년 기준, 전문시장 규모가 종합시장 규모의 2/3 수준이므로 상호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취지 반영</li> <li>• 전문공사 업종별로 구분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공사 실적 전부</li> <li>• 종합공사 업종별로 구분 인정</li> </ul>

※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 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0. 11. 12)

### ■ 주요 내용

-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 → 합산방식으로 변경(별표8)
  - 합산벌점 : 최근 2년간(4반기) 반기벌점의 합계 ÷ 2
  - 반기벌점 : 해당 반기 모든 벌점 합계 - 반기별 경감점수
    - ※ 주택선분양 제한 불이익기준의 경우 시행('21. 1. 1) 후, 업계 벌점 부과 추이 등을 감안하여 개선 검토 예정(국토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20. 4. 23)

• 벌점 경감기준(반기별 경감점수) 신설(별표8)

- 無사망사고 경감 : 반기별로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경감률을 적용하여 다음 반기에 측정된 부실벌점을 경감

무사망사고 연속반기	1반기	2반기	3반기	4반기
경감률	20%	36%	49%	59%

※ 사망사고 신고 지연 등으로 벌점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다음 반기에 해당 벌점을 가중

- 관리우수 비율 경감 : 반기별 10회 이상\* 점검을 받은 경우 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해당반기 벌점을 경감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횟수 산정

#### 관리우수 비율 산정방식

- 관리우수 비율 = 벌점 미부과 현장 수 / 반기별 점검현장 수
-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참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현장 수 산정

관리우수 비율	80% 이상 ~ 90% 미만	90% 이상 ~ 95% 미만	95% 이상
경감점수	0.2점	0.5점	1점

- 無사망사고,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을 동시에 받을 경우 관리우수 비율 경감을 먼저 적용

- 벌점 측정기준 개선(별표8)
  - 형사처벌 등 중복제재 조항이 있는 벌점기준 삭제
  - 주요 부실내용과 유사한 항목으로 벌점 부과 근거 삭제
  - ‘주요 구조부’ ‘그 밖의 구조부’ 정의 신설 및 벌점 측정기준별 벌점수준 조정 등
  -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벌점 하향조정(2→1점, 1점→0.5점)
- 공동수급체 벌점 부과 방식 현행유지(제87조 제2항)
  - 공동도급협정서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 부과(현행유지)
- 건설공사의 벌점 부과기한 도입(제87조 제2항)
  - (종전) 무제한 → (현행) 건산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 제한
    -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타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
- 벌점부과를 위한 심의절차(이의신청) 신설(제87조의 2, 3)
  - 벌점 통보에 대해 사유를 명시하여 측정기관에 이의신청 (벌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제87조의 2)
    - ※ 측정기관 : 국토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장 등 벌점을 측정한 자
  - 측정기관은 이의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부과대상에 심의결과 통지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 위원 6인 이상(제87조의 3)
    - (위원장) 국토부, 발주청, 인·허가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중 측정 기관이 임명·위촉
    - (위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
- 시행일 : '21. 1. 1(단, 합산방식 적용 및 벌점 경감은 '23. 1. 1)
  - ※ '21. 1. 1 전에 측정된 벌점은 합산벌점에 반영하지 않음

## 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부고시) 개정 안내 ('20. 11. 13)

### ■ 주요 내용

-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변경시 변경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2조제1호 개정)
  -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도급금액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조정된 경우, 조정된 도급금액으로 '하도급부분금액\*'을 산출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 심사
    -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부분에 대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상 계약단가)에서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 수급인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
- 건산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별표 1 개정)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19. 3. 26) 반영
    - \* 발주자 예정가격에 대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  
(종전) 100분의 60 미만 → (현행) 100분의 64 미만

### ■ 시행일

- 발령한 날('20. 11. 10)부터 시행

### 마.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10. 27)

#### ■ 시행령 주요 내용

-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공사 규정(부칙 제2조)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대상 사업장 범위 단계적으로 규정

공사구분 \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2022년 7월 1일	2024년 1월 1일
공공공사	100억 이상	50억 이상	1억 이상
민간공사	300억 이상	100억 이상	50억 이상

※ 시행일 : '20. 11. 27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

-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사업주 의무 신설(제12조의 2)

-전자카드 의무적용 대상현장 사업주의 전자카드 발급,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신설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 사용·정산 근거 마련(제10조의 2 신설)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에 공제부금 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까지 포함하여 사용·정산 가능



- 과태료 관련(별표)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및 고용관리 책임자 미신고 등 과태료 금액 조정

위반사항	과태료(종전)			과태료(현행)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가.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미신고	25	50	100	30	60	100
파. 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20	40	80	30	60	100
하. 고용부장관의 지시에 미보고(허위보고), 자료 미제출(허위 제출)한 경우	20	40	80	30	60	100
카.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설〉			100	200	300

※ 과태료 금액이 조정된 가, 파, 하목의 영 시행 전 과태료 부과처분은 영 시행 후 위반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고용관리책임자의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업무 신설(제2조 제1항 제4호)

- 공제부금 납부·근로일 신고 관련(제15조)

-공제가입사업주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 제출기한(익월 15일) 명확화

-전자카드 발급 대상 현장의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사용 근거 마련

## 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주요내용

### ■ 주요 개정내용

①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협력\*\*한 업체에 대한 가점(3점) 신설(별표1 및 별표2)

\* 국내시장진출 분야 지원기업 및 스타분야 지원기업

\*\* 공동도급 수행 또는 하도급계약 체결

②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실적 배점 상향(3점→5점)(별표1 및 별표2)

③ 상호협력평가 신청서 제출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제15조제1항)

- 전자문서의 보편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평가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적용기준

· '21년 1월 1일부터 시행('22년 평가시 반영)

- 단, ③은 '21년 평가시 반영

## 사. 국가계약예규 개정

### ■ 업역개편에 따른 낙찰기준 정비

(적격심사기준 제7조 제6항, [별표]2. 주4), [별표]3. 주6), [별표]4. 주6), [별표]5. 주6), 주7) 신설)

· [시공경험]종합 ·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시 의제실적 활용방안 마련

① 추정가격 3억~100억 공사

- (종합업체→전문공사) 해당 전문업종별 구분 실적의 2/3 적용

- (전문업체→종합공사)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 실적을 100% 적용하되, 전문업종 비율로 배점 구분 평가

· 단, 3억~10억 공사는 한시적으로 각 전문업종별 실적이 추정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전체실적 단순합산

\* '23. 12. 31 이전 입찰공고까지

② 추정가격 3억 미만 공사

- (2억~3억) 종합공사는 업종에 상관없이 실적평가,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실적만 평가

- (2억 미만) 특별신인도(실적 가점) 평가시 3억~10억 한시적 단순합산 준용

· [경영상태\_부채·유동비율]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참여시에는 모든 전문업체 가중 평균비율로 평가

· [경영상태\_영업기간] 종합공사에 전문업체 참여시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

· [하도급관리계획] 직접시공하는 경우 배점한도 부여

· [신인도] 해당 공사 규모·종류별로 신인도 평가항목을 달리 정하되(별첨 참조), 발주기관이 배점(한도)을 조정가능

###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개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 2 제3호 하단, 제2조의 3 제1항, 제2항 삭제, 제8조 제2항 개정, 제8조 제3항 신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4조 제2항 제2호 가목 단서 삭제)

·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지정하는 방식→입찰자가 공동이행을 대신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편

\*즉,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입찰자는 단독/공동이행/주계약자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가능

- 주·부계약자에 종합·전문업체 모두 참여 가능

- 대상공사 제한 폐지



■ 기타 개정(공공계약제도 혁신방안 반영 등)

- 적격심사 입찰 가격평가 제외대상(A값)에 품질관리비 추가(적격심사기준 [별표]1. 주1), 2. 주1), 3.주 1), 4. 주1), 5. 주1), 6. 주1) 개정
-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만점기준 완화(적격심사기준 [별표]1. 주2) 개정
  - (현행) A<sup>-</sup> → (개선) BB0
- 일자리 창출실적 평가체계 개선(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5. 개정, 주5) 10-5 신설, 적격심사기준 [별표]3. 일자리창출우대가점 개정, [별표]3. 주5) 마. 신설
  - 현장 상용직 근로자도 평가에 포함
- 혁신제품으로 인한 하자발생시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책임 면제, 지체일수 산정 제외(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 6 제15호 신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7호 신설)

■ 시행일 : '21. 1. 1

- 단, 아래 개정사항은 '21. 4. 1 시행
  - 적격심사 입찰 가격평가 제외대상에 품질관리비 추가
  - 간이형 중심제 지역경제기여도 기준 완화
  - 혁신제품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책임 면제, 지체일수 산정 제외

아.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

■ 업역개편에 따른 낙찰자결정기준 신설

- 적용대상 : 300억 미만 적격공사, 300억 이상 종평제 공사, 2~100억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 시공경험 평가
  - (종합업체 → 전문공사) 종합공사 실적에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을 적용한 실적의 2/3 적용
  - (전문업체 → 종합공사) 해당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별 보유실적을 각 구성비율 적용 후 합산  
다만, 한시적\*으로 10억 미만 공사의 경우, 각 전문업종별 추정가격의 10% 이상 실적 보유시 업종 전체 실적 단순합산  
\* '23. 12. 31이전 입찰공고까지만 해당
- 경영상태 평가
  - 종합 · 전문 모두 전체평균을 기준으로 평가  
다만, 전문공사에 전문업체 참여시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 적용
- 경영상태 영업기간 평가
  - (전문업체 → 종합공사) 해당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으로 평가
- 신인도 평가
  - (전문업체 → 종합 적격공사) 현 기준 적용하되 전문업체는 일부 항목 기본점수 부여  
\* 상호협력평가 1.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0.2점
  - (전문업체 → 종평제공사) 사회적 신인도 중 일부항목 기본점수 부여  
\* 상호협력 0.3점,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 (종합업체 → 종합공사 · 전문공사, 전문업체 → 전문공사) 기존대로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종합업체 → 전문공사, 전문업체 → 종합공사) 배점한도 적용
- (종합업체 → 종합공사) 기존대로 평가
- 시공품질 평가시 전문업체는 최저등급 부여
-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전문업체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업체가 부계약자로 참여시 100% 시공비율 인정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산법에 따른 등록기준 미충족시 10점 감점

■ PQ 및 적격심사기준

-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품질관리비 제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사항 반영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개선
  - '하도급 비율' 평가 삭제 및 배점 조정

■ 시행일 : '21. 1. 1

- 단,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품질관리비 제외 규정은 '21. 4. 1일부터 시행

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안내(12. 30)

-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제40조)
- 사업자 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세부유형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u>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u>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li> </ul> </li> </ul>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제108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또는 예방) 청구 가능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 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li> </ul>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 부과(제111조)
- 담합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시 손해의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 관련자료제출명령 가능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합·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li> </ul>

•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제77조 제3항 제4호)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분쟁 조정 신청 가능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 신청 각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한 경우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 신청 각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 신청한 경우 제외) 등</li> </ul> </li> </ul>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제47조)

- 규제대상인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의 계열사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단일화하고, 계열사의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익편취 규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특수관계인(특수관계인의 계열사**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부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li> <li>** 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20%</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익편취 규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특수관계인(특수관계인의 계열사*, 그 계열사의 자회사**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부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주식 총수의 20%(단일화)</li> <li>** 보유주식 총수의 50%</li> </ul> </li> </ul> </li> </ul>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제11조 제2항)

- 피인수기업 규모가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 부과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피취득자' 기준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li> <li>-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li> </ul> </li> </ul>

•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제18조 제2항 및 제3항)

- 지주회사의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의 신규편입시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

구분	현행	개정
상장사	20%	30% (10%P ↑)
비상장사	40%	50% (10%P ↑)



• 벤처지주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일반지주회사와 다르게 적용

\*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 적용 (일반지주회사와 동일)</li> <li>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지분요건과 동일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지주회사의 경우 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 폐지</li> <li>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인 경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특례(40%→20%) ※상장 자회사의 경우 현행(20%) 유지</li> <li>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지분보유 요건 완화(100%→50%)</li> </ul>

•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제20조)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 마련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주식 소유는 가능</li> <li>발행주식총수 소유, 부채비율제한(200%), 펀드내 외부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 안전장치 규정 포함</li> </ul>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제23조)

-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자산총액이 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불가</li> </ul>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공시(제25조 제2항 및 제29조)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 악용 예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주식거래 등에 관한 내용 공시 의무 규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제31조 및 부칙 제4조)

- 현행 자산총액 지정기준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국내총생산액(GDP)기준으로 변경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기준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시행령)의 기업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기준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이상 ※시행후 최초로 GDP가 2천조원 초과된 다음해에 지정하는 경우 부터 적용</li> </ul>

-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제8조, 제43조 및 제50조)

–법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상한\* 2배 상향

구 분	현 행	개 정
담합	10% (20억)	20% (40억)
시장지배력 남용	3% (10억)	6% (20억)
불공정 거래행위	2% 또는 5% (5억 또는 20억)	4% 또는 10% (10억 또는 40억)

\* 관련 매출액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 관련 매출 없는 경우 괄호 안 금액 이하 부과

-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제83조)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사 등 변호인의 조사·심의 참여 또는 의견진술 가능

-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강화(제81조)

–공정위의 위반행위 조사시 조사공무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등

### ■ 시행일 : '21. 12. 30 (제25조 제2항 외), '22. 12. 30 (제25조 제2항)

-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한도 단계적 축소\*(제25조 제2항 및 부칙 제7조)

\* 30% (~'23년) → 25% (~'24년) → 20% (~'25년) → 15% ('26년~)

### ■ 203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 11. 16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 참석자 : 운영위원 14인
- 회의내용
  - 회장 직무대행 선출(시경산업 고시응 대표이사)
  - 대표회원 보궐선출을 위한 전형위원회 구성

### ■ 204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 12. 3 건설회관 8층 회의실
- 참석자 : 운영위원 17인
- 회의내용
  - 제27대 회장 보궐선거일 결정('21. 2. 4)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 제4대 대표회원 보궐선출

- 전형위원회를 거쳐 선출직 대표회원 16인 보궐선출('20. 12. 3)

(주)보미건설 강창훈	(주)백림종합건설 권철승	강산건설(주) 김성현	키움건설(주) 김재우
미가건설(주) 문창규	디와이비종합건설(주) 백성현	명문종합건설(주) 선철훈	신안건설(주) 우정석
광진종합건설(주) 이장형	(주)원진건설산업 이철선	풍성건설(주) 임명환	(주)서도건설 전기홍
케이비아이산업개발(주) 진광우	청재종합건설(주) 최기만	이화공영(주) 최종찬	(주)한스원건설 한기원



# 「2020년 10·11·12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 ●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사,건수)

업체수	발급서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26	335	752	501	1,588

## ● 종류별 발급 건수

###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지분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서	영업기간 확인서	공정관리 조직	10년간 동일 공종 실적	계
79	79	86	6	1	84	335

###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건)

건설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발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부정 당	산재 예방	계
77	1	91	70	69	69	4	115	2	113	72	69	752

### 다. 기타서류

(단위:건)

개별	건설공사실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인	회원 확인	계
	자기	총괄표	소계						
421	13	1	435	0	0	0	66		501

# 「건설업체 현황」

## ●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20.12.31현재)

구분	업체수						등록수					
	계	일반					계	일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원	9,211	2,958	2,089	3,827	39	298	11,325	2,958	2,089	4,561	367	1,350
비회원	4,353	159	644	3,424	36	90	4,513	159	644	3,538	46	126
계	13,564	3,117	2,733	7,251	75	388	15,838	3,117	2,733	8,099	413	1,476

## ●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20.12.31현재)

구분	업체수						등록수					
	계	일반					계	일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원	1,396	225	68	1,040	11	52	1,557	225	68	1,059	64	141
비회원	561	19	13	495	12	22	570	19	13	497	15	26
계	1,957	244	81	1,535	23	74	2,127	244	81	1,556	79	167

## ● 전입현황

연번	업종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신고일자)
1	건축	021287	지티종합건설(주)	오완수	부산	2020-10-07(2020-10-14)
2	건축	110461	(주)특제종합건설	천석형	강원	2020-10-08(2020-10-22)

3	건축	021629	(주)유명종합건설	권재범	부산	2020-10-13(2020-10-22)
4	건축	101827	(주)청림개발	이성대	경기	2020-11-01(2020-11-24)
5	건축	012571	풍성건설(주)	임명환	경기	2020-11-23(2020-11-27)
6	토건	010096	신안건설(주)	우정엽 우정석	경기	2020-11-23(2020-12-01)
7	건축	021637	(주)사이다종합건설	안상진	부산	2020-12-10(2020-12-16)
8	건축	021007	와이제이건설(주)	유발	경기	2020-11-30(2020-12-21)
9	건축	041105	에스지컨스트럭터(주)	김민한	인천	2020-12-18(2020-12-24)
10	조경	010079	(주)호성종합조경	김은성	경기	2020-12-01(2020-12-31)

● 전출현황

연번	업종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신고일자)
1	조경	100049	(주)인건설	전흥기	경기	2020-09-23(2020-10-05)
2	토건	010508	(주)청명종합건설	정도용 최명열	경기	2020-09-18(2020-10-06)
3	건축	014767	씨에스건설(주)	홍사준	경기	2020-09-29(2020-10-12)
4	건축	013433	(주)자인이앤씨	김영석	경기	2020-07-17(2020-10-13)
5	건축	014762	(주)제이피종합건설	문주필	경기	2020-09-28(2020-10-19)
6	건축	014759	(주)태동종합건설	박준현	경기	2020-10-08(2020-10-21)
7	건축	013938	한밭토건(주)	오상열	충남	2020-10-15(2020-10-21)
8	건축	014771	(주)석원이앤씨	이희범	인천	2020-10-20(2020-10-23)
9	건축	014383	(주)팍스이앤씨	최용덕	인천	2020-10-20(2020-11-02)
10	건축	014497	(주)어반씨앤디	양병호	경기	2020-10-12(2020-11-06)
11	건축	021339	(주)세강이앤씨	정유중	경기	2020-10-20(2020-11-10)

12	건축	014411	(주)청신종합건설	최환석	경기	2020-10-30(2020-11-12)
13	건축	013574	엠케이종합건설(주)	최규한	경기	2020-11-02(2020-12-01)
14	건축	014779	(주)세원산업개발	이향훈 금세나	경기	2020-11-06(2020-12-08)
15	건축	013951	(주)지니종합건설	임대일	경기	2020-12-03(2020-12-11)
16	건축	014244	비엔종합건설(주)	이청구	충남	2020-12-03(2020-12-16)
17	건축	014043	(주)대연	김만용	경기	2020-12-01(2020-12-18)
18	건축	014250	(주)태원산업종합건설	백요한	경기	2020-11-24(2020-12-24)
19	건축	013770	화평토건(주)	송명근	인천	2020-12-10(2020-12-28)
20	건축	014805	(주)바른종합건설	박서영	경기	2020-12-23(2020-12-30)
21	건축	014784	(주)광명산업개발	유준호	전남	2020-12-16(2020-12-30)



## 종합건설업 기재사항(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시 구비서류

공 통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법인 또는 사용인감 도장
상호, 명칭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임원명단 작성(별지) -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지자체 신원조회 활용)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원명단 작성(별지) -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영업 소재지 (전입지에서 신고)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 통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사진
	자기소유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 전, 월세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임차보증금온라인입금확인증
	재임대차 (전대)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재임대계약서,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인감증명서, 임차보증금온라인입금확인증
	지방전입	지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서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다른 서류는 위와 동일함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법인등록번호 변경 증명서류
	개 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증명서류
국적 또는 소속국가 변경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변경 연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회원사 무료 상담서비스 안내

- 상담방법 : 우리사회 사전신청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신청서식은 우리사회 홈페이지(www.scak.or.kr-자료/통계-건설서식-민원서식/기타)
- 문의 : 건설정책실 (02-3218-9117, pjingong@cak.or.kr)
- 법률상담 <변호사>

법률고문	박찬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와이케이
위촉기간	'21. 1~ '21. 12월
비고	전직 부장판사
프로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대 정치학과('79), 서울대 법과대학원('82)</li> <li>-건국대 행정대학원,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문가과정 수료</li> <li>-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72기 수료</li> <li>-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22회 사법시험 합격)</li> <li>-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 판사</li> <li>-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문부)</li> <li>-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장</li> <li>-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li> <li>-제45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li> <li>-서울 서초구 선거관리위원장</li> <li>-서울대 정치학과 법조모임 회장</li> <li>-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li> <li>-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종신이사</li> <li>-제6회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li> </ul>

법률고문	윤치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와이비엘 대표변호사
위촉기간	'21. 2~ '22. 1월
비고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프로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대학교 및 동대학원 법학과 졸업</li> <li>-국방부 국제계약자문위원</li> <li>-국방품질원 자문변호사</li> <li>-국방부 고등검찰관</li> <li>-법무부 규제심사위원</li> <li>-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li> </ul>

법률고문	이득홍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담박
위촉기간	'20. 6~ '21. 6월
프로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li> <li>-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26회 사법시험 합격)</li> <li>-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등</li> <li>-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장검사 등</li> <li>-제44대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li> <li>-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li> <li>-제10대 서울북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등</li> <li>-제39대 법무연수원 원장</li> <li>-양형위원회 양형위원</li> </ul>

# CAK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종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주소	회원가입 일자
건축	014757	엠씨씨건설(주)	김병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710호(양평동3가,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2020-10-12
건축	014766	(주)예진아키	허태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6(가락동,예진빌딩)	2020-10-15
건축	014769	아이디종합건설(주)	전옥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길 147, 지하층(화곡동,골든라인씨티)	2020-10-15
건축	014770	(주)정인종합건설	이미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길 65, 102호(중곡동)	2020-10-15
건축	014775	(주)뉴석천	조부덕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48, 408-1호(내발산동,힐스테이트 상가동)	2020-10-21
건축	021629	(주)유명종합건설	권재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5길 15, 1005호(서초동, 벨타워오피스텔)	2020-10-22
건축	140498	(주)다짐산업개발	정홍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9-26, 5층(잠원동, 은정빌딩)	2020-10-22
건축	014780	(주)민음종합건설	김영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00, 610호(마곡동,마곡지웰타워)	2020-10-23
건축	014782	(주)남성건설	윤사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908호(적선동,광화문 플래티넘)	2020-10-29
건축	013153	(주)강남종합건설	송영춘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56-20,202호(둔촌동,상상프리)	2020-11-18
건축	014792	강인종합건설(주)	허은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25-7, 302호(공릉동,이안클래스)	2020-11-24

업종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주소	회원가입 일자
건축	014791	(주)세화앤드건설	신재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1길 52, 2층(구의동)	2020-11-24
건축	014136	네오건설(주)	한철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에이703호(양평동5가, 선유도코오롱디지털타워)	2020-11-25
건축	014793	(주)통큰건설	김세광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72, 201호(묵동)	2020-12-01
건축	014794	디와이앤씨(주)	송진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6길 15, 102호(논현동)	2020-12-01
건축	014783	바른건설(주)	김병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73, 202호(상계동, 대림상가)	2020-12-04
건축	014620	(주)트러스트에이앤씨	이준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17, 제10층 1001호(마곡동, 보타닉파크타워)	2020-12-08
건축	014801	유니엔스(주)	이상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3, 401호(구로동)	2020-12-11
조경	010350	(주)영화종합조경	손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54-2, 303호(양재동)	2020-12-11
건축	021637	(주)사이다종합건설	안상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78, 비동 1402호(공덕동, 마포신영지웰)	2020-12-21
건축	014809	(주)하나종합건설	김도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16층 1620호(문정동,문정대명벨리온)	2020-12-29
건축	040790	(주)엔코개발	한진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8, 1411호(신천동,잠실아이스페이스)	2020-12-30

앞선 생각,  
정책 중심,  
함께하는  
서울시 건설협회